

경상북도



선 람	기관(부서)의 장

제6466호 2020년 9월 3일(목)

경 상 북 도

■ 고 시

-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7호) 5

회 람								
--------	--	--	--	--	--	--	--	--

발행인:경상북도지사 편집:대변인실

-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8호) 7

■ 공 고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 사업예정지)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3호) 9
- 2020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취소 공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6호) 13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7호) 15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8호) 24

시 군

■ 고 시

-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0-104호) 32
- 안동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208호) 36

- 안동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안동시 고시 제2020-209호) 56

■ 공 고

- 칠곡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칠곡군 공고 제2020-768호) 59

기 타

■ 고 시

- 하천점용허가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18호) 63
-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22호) 64



경 상 북 도

고 시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km)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현구역	국도	광양-양양 (59호선)	시점 :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864-7 중점 :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823-1	0.48	-	현 도로여건 반영	-
변경 구역			시점 :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864-7	0.48	-		-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명	④구 간	⑤총연장 (km)	⑥중 요 경과지	⑦구역결정 (변경)이유	⑧비고
			중점 :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823-1				

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도로의 종류	국도	노선번호	59호	노선명	광양-양양
접도구역의 (변경)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양측 5.0m 범위 내 ○ 위 치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864-7 ~ 선산읍 생곡리 823-1 				
접도구역 변경목적	○ 금회 도로구역 변경에 따른 접도구역 변경				
비 고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 세목

- 도로(접도)구역 변경(해제)대상 토지의 세목 게재생략(지형도면 공람장소에 비치)

4.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9)

※ 참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

경상북도 고시 제2020-28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대상 시설물			지정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철과 2교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902-19	북부건설사업소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고요 1교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994-10	북부건설사업소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저전교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 736-1	북부건설사업소	준공후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관리주체 관리	



경 상 북 도

공 고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3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 다 음 -

1. 지구명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전 사업예정지

가. 지정기간 : 2020. 9. 8. ~ 2025. 9. 7.(5년간)

나. 대상지역 : 2개 군, 4개 읍·면, 11개리

- 군위군 - 군위읍(대흥리), 소보면(내의·봉소·봉황리),
- 의성군 - 봉양면(신평·안평·화전·사부리), 비안면(도암·쌍계·화신리)

다. 지정 면적 : 63.5km²

라. 지정 내역

(단위 :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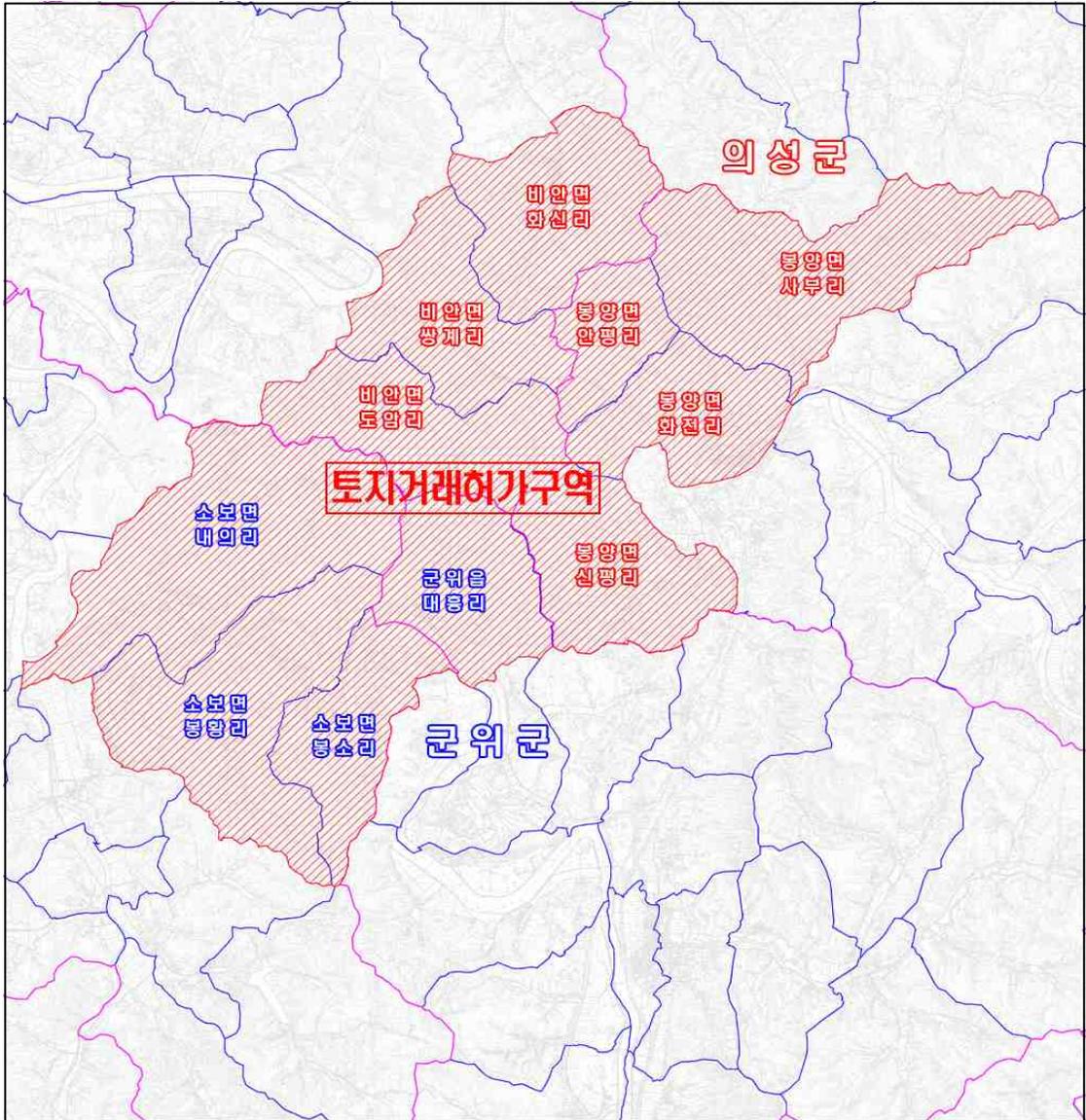
구 분	대상지역	전체면적	허가대상면적	비고
합 계	11개 법정리	63,526,446.5	63,526,446.5	
군위군 26.7km ²	군위읍 대흥리	4,485,227	4,485,227	
	소보면 내의리	10,027,804	10,027,804	
	소보면 봉소리	4,066,250	4,066,250	
	소보면 봉황리	8,160,504	8,160,504	
의성군 36.8km ²	봉양면 신평리	5,343,571.5	5,343,571.5	
	봉양면 안평리	2,549,466	2,549,466	
	봉양면 화전리	4,181,587	4,181,587	
	봉양면 사부리	8,545,865	8,545,865	
	비안면 도암리	5,516,641	5,516,641	
	비안면 쌍계리	4,976,440	4,976,440	
	비안면 화신리	5,673,091	5,673,091	

2.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초과시
	상업지역	200m ² 초과시
	공업지역	660m ² 초과시
	녹지지역	100m ² 초과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90m ²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지	500m ² 초과시
	임야	1,000m ² 초과시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 ² 초과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에서 정한 면적

3. 허가구역 지정 도면(지형도)



통합신공항 이전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범례

-  토지거래허가구역
-  읍면경계
-  리경계

Scale = 1 : 30,000



4. 허가구역 지번별 조서(별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 작성된 것으로 최근 토지이동사항이 미반영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 위치도면(구역설정)을 기준으로 함.

[문의 전화번호]

- 경상북도 토지정보과 ☎(054)-880-4043
- 경상북도 통합신공항추진단 ☎(054)-880-8845
- 군위군 민원봉사과 ☎(054)-380-6384
- 의성군 민원과 ☎(054)-830-6384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6호

2020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 취소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및 기술능력 향상 등을 위해 실시코자 했던 「2020년 경상북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통합교육」을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라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하고, 예정되었던 교육일정을 전면 취소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3.

경 상 북 도 지 사

구 분	교육계획	공고내용
1기	일시 : 2020. 6. 3.(수) 13:00~16:00 장소 : 안동시민회관 소공연장	“교육연기” → “교육취소”
2기	일시 : 2020. 7. 9.(목) 13:00~16:00 장소 : 포항 근로자복지관 덕업관	
3기	일시 : 2020. 9. 10.(목) 13:00~16:00 장소 : 대구가톨릭대 소강당	“교육취소”

구 분	교육계획	공고내용
4기	일시 : 2020. 9. 11.(금) 13:00~16:00 장소 : 대구가톨릭대 소강당	“교육취소”

※ 사이버교육안내 : 한국옥외광고센터(<http://edu.ooh.or.kr>), 2020. 10월경 개
설(예정)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7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이 폐지되고,
- 나.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안 제2조)
-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고 재원과 용도를 규정(안 제3조, 안 제4조)
-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예산담당관

전화: 054-880-2173 Fax 054-880-3739, 이메일: hyeontt@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는 각각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

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의 수입금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
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
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다른 회계의 전출

4.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
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
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영)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
하며, 통합기금의 보유자산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통합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
2. 분임통합기금운용관: 예산 담당 부서의 장
3.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예수금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용자금”이라 한다)한 용자금의 이자율, 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합기금과 관련한 주요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각종 기금의 기금운용관

2. 그 밖에 기금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제1호에서 정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통합기금에의 예탁 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개별 기금 관련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금의 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 ① 제8조에 따른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탁금의 이자율은 매년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율) ① 융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용자를 받은 자의 자금 사정상 용자기간 만료일까지 용자금의 상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용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용자금의 이자율은 매년 예탁금의 이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상북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조성된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본다.

제4조(승계)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상환한다.

관련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0-1558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 가. 이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새로 제정되는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이관
-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례 용어 정비

- ‘의거’를 ‘따라’로 변경(안 제1조)
-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안 제3조제2항)

다.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문 삭제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담당부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서면, 팩스, 전화, 이메일, 방문 등

라. 보내실곳

주소: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예산담당관

전화: 054-880-2173 Fax 054-880-3739, 이메일: hyeontt@korea.kr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 조례로 설치하는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지시할 수 있다.

④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20조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③ 「경상북도 국제협력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

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④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⑥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⑦ 「경상북도 말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경상북도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⑧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⑨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⑩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⑪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⑫ 「경상북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⑬ 「경상북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시 군

고 시

김천시 고시 제2020-104호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

김천시 고시 제2020-77호(2020. 6. 29)로 고시한 바 있는 「김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 9. 3.

김 천 시 장

1. 정정내용

[김천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8~30	주간선도로	2,760	대로1-7	문당동 884	일반도로	교동택지지구	경고제59호 (`80.3.17)	
변경	대로	2	2	8~30	주간선도로	2,760	대로1-7	문당동 884	일반도로	교동택지지구	경고제59호 (`80.3.17)	선형변경
기정	소로	3	89	6	국지도로	127	부곡동 소로3-87	부곡동 1265-2	일반도로	부곡금류아파트 북측	경고제131호 (`78.4.28)	
변경	소로	3	89	6	국지도로	129	부곡동 소로3-87	부곡동 1265-2	일반도로	부곡금류아파트 북측	경고제131호 (`78.4.28)	선형변경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2-2	대로2-2	■ 선형변경	■ 도로개설 현황,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소로3-89	소로3-89	■ 선형변경	■ 도로개설 현황,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형변경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주차장	삼락동 1208 일원	-	증) 1,673	1,673	경고 제95-11호 (`95.6.30)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실효고시 정정 - 당초고시 : 폐지 - 정정고시 :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시설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 계획 승인(경상북도고시 제1995-119호, 1995.7.10.)을 득한 시설로 실효고시(김천시 고시 제2020-77호, 2020.6.29.)를 정정하여 시설을 존치하고자 함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성내 공원	근린 공원	성내동 61 일원	78,356	감) 1,216	77,140	건고제37호 (`76.3.27)	
변경	5	교동 공원	자연 공원	교동 335 일원	331,718	감) 5,581	326,137	건고제37호 (`76.3.27)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성내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78,356m² → 77,140m² (감 1,21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변경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88호, 2020.6.30.)에 따라 해당공원의 국공유지 유예 필지 변경을 반영하여 근린공원 면적변경
5	교동 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공원 면적변경 - 면적 : 331,718m² → 326,137m² (감 5,581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 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 변경 공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888호, 2020.6.30.)에 따라 해당공원의 국공유지 유예 필지 변경을 반영하여 자연공원 면적변경

[지레도시지역]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지레 16	6	국지 도로	153	소로1- 지레1	소로2- 지레2	일반 도로	소로3- 지레14	경고제162호 (`79.5.30)	
변경	소로	3	지레 16	6	국지 도로	81	소로1- 지레1	지레면 상부리 753	일반 도로		경고제162호 (`79.5.30)	연장 축소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 지레16	소로3- 지레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축소 및 기점변경 - 연장 : 153m → 81m(감 71m) - 기점 : 소로2-지레2 → 지레면 상부리 7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 현황,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 연장축소 및 기점변경

2. 정정사유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실효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에 대한 누락사

항 및 정정사항 반영

3. 지형도면 : 붙임 도면(계재 생략)

4. 관계도서는 김천시 건설도시과(☎ 054-420-642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끝.

안동시 고시 제2020-208호

안동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안동시 용상동 1167번지 일원 안동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2-6호선, 소로1-5호선, 소로3-55호선]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안 동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북도 안동시 용상동 1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안동시 용상동 공동주택 주변도로 개설공사

(중로2-6호선, 소로1-5호선, 소로3-55호선, 도로정비)

3. 변경사유

- 토지조서 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의 변경
- 지장물 조서 변경
- 토지조서 오기 정정
- 사업 시행자 주소 변경

4.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가. 도로(중로2-6호선)개설

- 사업 면 적 : 3,890.0㎡
- 도로 개 설 : L(연장)=230.0m, B(폭)=15.0~18.0m

나. 도로(소로1-5호선)개설

- 사업 면 적 : 1,483.4㎡
- 도로 개 설 : L(연장)=142.0m, B(폭)=10.0m~61.0m

다. 도로(소로3-55호선)개설

- 사업 면 적 : 1,681.0㎡
- 도로 개 설 : L(연장)=260.0m, B(폭)=6.0m

라. 도로(도로정비)개설

- 사업 면 적 : 79.0㎡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 성 명 : 주식회사 대명수안 대표이사 지 우 제

- 주 소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삼성동, 4층)
 변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대치동, 루첸타워)

6. 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허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1년 03월 16일

(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의 준공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주소·성명 : 붙임과 같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변경)

○ 토지명세 (총괄) -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1	용상동	1078-188	전	38	38		기획재정부			
2	용상동	1166-3	전	230	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38, 1층 (중동)	주식회사 우성이앤씨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정	청화 새마을금고	
3	용상동	1166-2	전	131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4	용상동	1167	장	29,914	85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5	용상동	1167-1	장	124	1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변경 없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가치분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6	용상동	1170	장	3,157	1,3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7	용상동	1171-6	대	44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8	용상동	1171-3	장	137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9	용상동	1179-359	도	45	45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정 변경
10	용상동	1179-360	전	87	87		기획재정부			
11	용상동	1179-361	전	428	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2	용상동	1179-167	답	484	48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3	용상동	1221-10	대	22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경상북도 교육감 주식회사 대명수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14	용상동	1224-8	천	71	71		국토교통부			
15	용상동	1516-29	전	498	436	안동시 법상길 41-9, 101동 1302호 (법상동, 상일파크맨션)	권0호	가처분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안동시 법상길 41-9, 101동 1302호 (법상동, 상일파크맨션)	권0호			
16	용상동	1517-134	전	127	34		기획재정부			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변경
17	용상동	1517-190	전	97	97	안동시 용상동 1516	송0혜	근저당권 설정	용상 새마을금고	기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변경
18	용상동	1517-196	전	259	259	안동시 태화동 666-157	(주)한성종합 기술단 건축사사무소	보전처분	대구 지방법원	기정
						안동시 태화동 666-157	(주)한성종합 기술단 건축사사무소			변경
19	용상동	1517-197	대	155	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20	용상동	1517-198	도	21	21		국토교통부			
21	용상동	1517-201	대	144	14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22	용상동	1517-202	대	72	72	안동시 용상동 154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찬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23	용상동	1517-203	대	80	80	안동시 용상동 1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송0혁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24	용상동	1517-204	대	84	8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1 청솔아파트 4-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현 주식회사 대명수안	근저당권 설정 지상권설정	용상 새마을금고	기정 변경
25	용상동	1517-278	대	164	164	안동시 용상동 1629 주공본가타운 666-804 안동시 송진동 1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남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26	용상동	1517-206	전	708	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기정
27	용상동	1524-43	도	759	710		국토교통부			변경
28	용상동	1524-44	도	3	3		국토교통부			
29	용상동	1524-45	도	130	78		국토교통부			기정
30	용상동	1524-46	도	37	30		국토교통부			변경
31	용상동	1524-42	도	67	26		국토교통부			
32	용상동	1549-3	도	107	107		농림축산 식품부			
33	용상동	1634-1	도	110.4	110.4		안동시			
합 계				38,534.4	7,133.4					기정
				38,472.4	7,133.4					

○ 편입용지조서(중로2-6호선) - 변경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관계	
1	용상동	1167	장	29,914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변경 없음
2	용상동	1167- 1	장	124	12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가처분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변경
3	용상동	1170	장	3,157	1,36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안동시 범상길 41-9, 101동 1302호 (법상동, 상일파크맨션)	권0호	가처분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4	용상동	1516- 29	전	436	436	안동시 범상길 41-9, 101동 1302호 (법상동, 상일파크맨션)	권0호				변경
						안동시 범상길 41-9, 101동 1302호 (법상동, 상일파크맨션)	권0호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5	용상동	1517-134	전	127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6	용상동	1517-190	전	97	97	안동시 용상동 1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 (대치동, 루첸타워)	송0혁 주식회사 대명수안	근저당권설정	용상 새마을금고	기정 변경
7	용상동	1517-196	전	259	259	안동시 태화동 666-157 안동시 태화동 666-157	(주)한성종합 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주)한성종합 기술단 건축사사무소	보진처분	대구 지방법원	기정 변경
8	용상동	1517-197	대	155	1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9	용상동	1517-198	도	21	21		국토교통부			
10	용상동	1517-201	대	144	14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동 1102호	박0분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11	용상동	1517-202	대	72	72	안동시 용상동 154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찬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2	용상동	1517-203	대	80	80	안동시 용상동 151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송0혁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3	용상동	1517-204	대	84	8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1 청솔아파트 4-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현 주식회사 대명수안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용상 새마을금고	기정 변경
14	용상동	1517-278	대	164	164	안동시 용상동 1629 주공본가타운 666-804 안동시 송천동 1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권0남 임0영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5	용상동	1517-206	전	708	70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16	용상동	1549-3	도	107	107		농림축산 식품부			
합 계				35,711.0	3,890.0					기정
				35,649.0	3,890.0					변경

○ 편입용지조서(소로3-55호선) - 변경

순번	위 치	지 번	지 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1	용상동	1166-2	전	131	5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2	용상동	1167	장	29,914	8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3	용상동	1221-10	대	22	22		경상북도 교육감			
4	용상동	1224-8	천	71	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5	용상동	1524-43	도	759	592		국토교통부			기정 변경
6	용상동	1524-44	도	3	3		국토교통부			
7	용상동	1524-45	도	130	78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기정 변경
8	용상동	1524-46	도	37	30		국토교통부			
9	용상동	1524-42	도	67	26		국토교통부			
합 계				31,134.0	1,681.0					기정
				31,134.0	1,681.0					

○ 편입용지조서(소로1-5호선) -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1	용상동	1078-188	진	38	38		기획재정부		
2	용상동	1166-3	진	230	230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천동로 238, 1층 (중동)	주식회사 우성이앤씨	근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청화 새마을금고
3	용상동	1167	장	29,914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4	용상동	1179-359	도	45	45		국토교통부		기정
5	용상동	1179-360	진	87	87		기획재정부		변경
6	용상동	1179-361	진	428	4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7	용상동	1179-167	답	484	484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8	용상동	1524-43	도	759	50		국도교통부 기획재정부			기정 변경
9	용상동	1634-1	도	110.4	110.4		안동시			
합 계				32,095.4	1,483.4					기정
합 계				32,095.4	1,483.4					변경

○ 편입용지조서(도로정비) -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명세		비고
						주소	성명	관계	성명	
1	용상동	1167	장	29,914	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2	용상동	1171-6	대	44	7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기획재정부 주식회사 대명수안			기정 변경
3	용상동	1171-3	장	137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0(대치동, 루첸타워)	주식회사 대명수안			
4	용상동	1524-43	도	759	68		국도교통부 기획재정부			기정 변경
합 계				30,854.0	79.0					기정
합 계				30,854.0	79.0					변경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	용상동	1516-29	기정	작업장	판넬조 판넬지붕	m ²	70.0	안동시 범상길 41-9, 101동 1302호	권0호	기정
			변경	작업장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m ²	70.0			
			기정	주택	킨테이너	m ²	18.0			
			변경	사무실	킨테이너 6m×3m	m ²	18.0			
			기정	주택	판넬조 판넬지붕	m ²	5.3			
			변경	창고	판넬조 판넬지붕	m ²	5.3			
			기정	작업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m ²	30.3			
			변경	차양 (주차장)	철파이프조 판넬지붕	m ²	30.3			
			기정	이동식 화장실		식	1			
			변경	이동식 화장실	FRP	식	1			
			추가	전기시설	5Kw	식	1			
			추가	바닥포장	콘크리트	m ²	70.0			
			추가	담장	(2.2m×2.4m×7) +(1.2m×30m)	m ²	72.96			
			추가	자바라	6m×0.5m	식	1			
추가	간판	2.2m×0.3m	개	2						
추가	관정	소공	식	1						
추가	집기	목재 선반 등 이전비	식	1						
							경북 안동시 범상길 41-9, 101동 1302호(범상동, 상일파크맨션)	목조건축 포유 (대표자: 김0근)	변경	

순번	위치	지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추가	기타자재				주소	성명	
2	용상동	1517-201	추가	기타자재	사무실 비품 등 이전비	식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1102	박0분	
			추가	영업보상	목조건축 포유	식	1			
			기정	주택	목조기와 지붕 단층	m ²	69.4			
			변경	주택	목조스레트기와지붕 (1.7×3.6)+(9.4×2.3) +(7.5×2.1)+(3.3×8.5)	m ²	71.54 (면적 32.6)			
			기정	주택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6.0			
			변경	차양1	스레트지붕(6.4×1.4)	식	1 (면적 0.44)			
			기정	보일러실	블록조	m ²	11.1			
			변경	차양2	스레트 지붕단층 스레트지붕(7.7×2)	식	1			
			기정	보일러실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4.0			
			변경	보일러실	블록조 스테트지붕 (3×1.5)	m ²	4.5			
			기정	주택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12.0			
			변경	창고1	블록조 스테트지붕 (5.4×1.9)+(1.1×2.6)	m ²	13.12			
			기정	주택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14.3			

순번	위 치	지 번	종 류		구조 및 구역	단위	면적 수량	소 유 자		비고
			변경	기정				주소	성명	
3	용상동	1517-202	변경	주택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	안동시 용상동 1545-5	권0찬	
			기정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5.3			
			변경	화장실	블록조 스레트 지붕단층	m ²	-			
			기정	호두나무	30년	주	1			
4	용상동	1517-203	기정	주택	목조기와 지붕 단층	m ²	30.0	안동시 용상동 1545-5	권0찬	송0혁
			변경	주택	목조 기와지붕 (3×7.4)+(1×2)+(4.7×3.6)	m ²	41.12 (편입 24.2)			
			추가	폐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2.5×4.3)	m ²	10.75			
			기정	주택	목조기와 지붕 단층	m ²	59.6			
			변경	주택	목조시멘트기와지붕 (3.8×1.6)+(7.5×7)	m ²	58.58 (편입 34.08)			
			기정	주택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m ²	12.5			
			변경	창고	블록조 스레트지붕 (5.1×2.4)+(0.8×2.6)	m ²	14.32			
			기정	주택	블록조 판넬지붕 단층	m ²	24.5			
변경	주택2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8.4×3.2)	m ²	26.88						

순번	위 치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5	용상동	1517-1 90	기정	관정		식	1	안동시 용상동 1516	송0혁
			변경	관정	소공	식	1		
			기정	감나무	35년	주	2		
			기정	헛개나무	15년	주	1		
			추가	차양1	스레트지붕(8.4×1.5)	식	1		
			추가	차양2	스레트지붕(6×2)	식	1		
			추가	가추	블록조 스테트지붕 (1.8×1.2)	식	1		
			추가	바닥포장	보도블럭(진입로) 9m×3m	m ²	27		
			기정	농막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m ²	14.0		
			기정	견사	목조	식	2.0		
변경	견사	목조 스테트지붕 (1×3)	m ²	3.0					
변경	견사	철재 스테트지붕 (1.5×2)	m ²	3.0					
기정	호두나무	12년	주	2					
기정	엄나무	6년	주	52					
기정	팽나무	15년	주	1					
기정	팽나무	5년	주	1					
기정	라일락	25년	주	1					
기정	팽나무	7년	주	1					
기정	사과나무	12년(분재용)	주	1					

순번	위 치	지 번	종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6	용상동	1517-204	기정	주택	목조시멘트기와	㎡	11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811 청솔아파트 4-105	권0현
			변경	주택	목조 기와지붕 (2.8×7.3)+(3.8×4.7) +(2.7×7.8)	㎡	58.01		
			기정	관정		식	1		
			변경	관정		식	-		
			추가	창고	블록시멘트 (3.5×2.1)	㎡	7.35		
			추가	비닐 하우스	쉬파이프기둥 (3.3×2.1)	식	1		
7	용상동	1517-278	기정	대추나무	주	1	안동시 용상동 1629 주공본가타운 606-804	권0남	
							안동시 송천동 1177	임0영	
8	용상동	1517-196	기정	비닐 하우스	㎡	500.0	안동시 태화동 666-157	주식회사 한성종합 기술단 건축사 사무소	기정
			변경	비닐 하우스	㎡	500.0			
			기정	아로니아	주	1			
			기정	아로니아	주	1			
			기정	호두나무	주	1			
			변경	호두나무	주	2			
			기정	사과나무	주	4			
			변경	사과나무	주	5			

순번	위 치	지 번	종 류	구조 및 규격	단위	면적 수량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9	용상동	1166-3	기정	15년	주	1	주공아파트2단지)	주식회사 우성이앤 씨	
			변경	15년	주	3			
			기정	20년	주	5			
			변경	R:0.25m, H:6m 20년	주	5			
10	용상동	1166-3	추가	목조기동시멘트 스레트지붕	m ²	36.0	경북 안동시 경동로 905, 101동 304호(용상동, 주공아파트1단지)	지0식	
			추가	목조기동시멘트 스레트지붕(3×1.5m)	식	1			
			추가	목조기동시멘트 스레트지붕(5×1.5m)	식	1			
			추가	목조파이프기동 스레트지붕(12×2.5m)	식	1			
			추가	콘크리트(12×2.5m)	m ²	30.0			
			추가	주택내 폐가구 등	식	1			
			추가	목조시멘트 스테트지붕 (9.4×3)+(3×6.5)	m ²	47.7			
			추가	목조시멘트 스테트지붕 (3.5×2)	식	1식			
11	용상동	1167-1	추가	스레트지붕 (1.5×9.4)	식	1식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526 금호어울림아파트 102-1102	박0분	
			추가	철재 H:1.5 (문주 및 담장2m×1.5m포함)	식	1식			
			추가	목조시멘트 스테트지붕 (3.3×2)	m ²	6.6			
			추가	콘크리트	m ²	18.33			

안동시 고시 제2020 - 209호

안동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승인 고시

안동시 용상동 1517-4번지 일원 안동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일

안 동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

- 안동시 용상동 1517-4번지 일원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명을 변경하고 지적분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하고자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체육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다목적 체육관	체육 시설	용상동 1517-4일원	9,750	증)4	9,754	안고제19호 (18.02.12)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다목적 체육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명 변경 : 체육관 → 다목적체육관 • 면적증가 : 9,750m² → 9,754m² (증 4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명을 변경하고 지적분할측량을 반영하기 위해 면적 변경

3.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관계도서는 안동시청 도시디자인과(054-840-540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시 군

공 고

칠곡군 공고 제2020-768호

칠곡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사업(대학 : 영진전문대학)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의 열람을 실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3일

칠 곡 군 수

1. 인가신청의 요지

- 농업기술센터 옥외에 쉼터를 조성하여 농업인 및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열람일시 및 장소

- 열람일시 : 2020.09.03. ~ 2020.09.17.
- 열람장소 : 칠곡군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사업종류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고
군계획시설 (공공청사)사업	농업인 옥외 쉼터 조성공사	약목면 동안리 831번지 일원	6,848㎡ 중 671㎡	실시계획인가일 로부터 ~ 2020.11.30.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 성명 : 칠곡군수(농업기술센터)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명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리.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합계				28,888	6,848			
1	약목면 동안리	835	답	671	671	-	칠곡군	
2	약목면 동안리	866	구	10,555	71	-	농림축산 식품부	
3	약목면 동안리	872	도	11,636	80	-	농림축산 식품부	
4	약목면 동안리	831	대	2,995	2,995	-	칠곡군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등기부상)
	리.동	지번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5	약목면 동안리	831-1	대	2,733	2,733	-	칠곡군	
6	약목면 동안리	834-1	대	298	298	-	칠곡군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도시계획과(☎054-979-6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타

고 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 - 4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0. 9.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형산강(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24번지 외 2필지 일원 면적 : 일시(450㎡)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집수암거 관 청소작업 임시대책 사업 시설개요 : 집수암거(D=600mm, L=90m, B=5.0m)
점용 기간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0-422호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이를 고시 합니다.

2020. 9.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의 명칭	감천(국가하천)
점용자 성명 및 주소	성명 :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장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3길 14
점용위치 및 면적	위치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581-58번지 일원 면적 : 531㎡
점용목적 및 시설개요	점용목적 : 선산지구 농업용수관로 설치 시설개요 : 농업용수관로 D=800mm, L=354m
점용 기간	당초 :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변경 : 2018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새바람  행복 경북!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이름  청렴한 세상